

영등포구의회
제146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7. 2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9. 6. 23.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개정(제안) 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중 자전거정비소를 무료로 운영하되 부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전거 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가 부품비용을 부담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, 관련용어의 정의를 구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자전거정비소를 경우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.(안 제2조제3호)
- 현행 조례에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자 범위를 “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”로, 영릉이자전거의 이용자 범위는 “관내에 거주하는 주민”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자전거대여소에서 영릉이자전거를 대여할 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, 영릉이

자전거의 이용자 범위도 “자전거를 이용하는 자”로 확대하고자 함.(안 제2조제5호)

- 자전거정비소와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되, 자전거 정비소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비용을 자전거 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가 부담하도록 함.(안 제10조제2항)

■ 관련법규

-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■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서초구, 노원구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자전거정비소 운영 시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료로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품비용에 대해서는 자전거 소유자 및 정비의뢰자가 부담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며, 관련용어의 정의를 구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7. 2.

보 고 자 : 이 남 식